

광주지방법원 2024. 5. 29 선고 2023가단5470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4. 4. 3.

판 결 선 고 2024. 5. 29.

주 문

-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4,83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4,83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보전채권

- 1) E은행은 2007. 10. 19. 주식회사 F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고, D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- 2) D은 위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위 대출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E은행 → 주식회사 G →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다.
- 3) 주식회사 G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4256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. 8. 1. 확정되었다.
- 4) 2023. 9. 8.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“141,350,942원 및 그 중 74,877,252원에 대하여 2014. 6. 6.부터 2014. 7. 17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”이다.

나. D의 이 사건 증여계약과 당시 재산상태

- 1) D은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3. 2. 20.부터 2023. 6. 26.까지 합계 4,830,000원의 금원을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하였다.
- 2)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, 소극재산은 원고의 채권만 보더라도 141,350,942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

1)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),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)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채무자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(피고는, D이 피고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제일 전후하여 D이 피고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송부하여 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, 피고와 D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)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, 채무자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별지 목록 기재 금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, 위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,83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4,83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수

별지